

■ 매수인소득 기준 (소득 합산액이 분양가 10%이상)

유형	소득증빙서류	비고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소득 분양가의 10%이상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과세표준 : 분양가 이상, 납부세액 : 분양가 10%이상) 2. 법인명의 통장 잔고 분양가의 10%이상	1. 기타필요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법인 대표의 통장 잔고 증빙 불가
통장잔액증명서	통장잔액증명서 당월, 전월 (통장입출금내역 제출시 통장사본 첨부 必)	1) 전월금액 > 당월금액 : 당월금액기준 2) 전월금액 < 당월금액 : 평균금액 (정기예금의 경우 당월 잔액증명서만)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 납부증명(본세 적용, 부가세 제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토지, 주택, 건축 재산세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연금보험(개인)	
금융소득증명	유가증권 평가액, 보험료 납입 잔액증명서 보유유가증권상세명세서, CMA계좌내역서 등	
프리랜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or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대체 서류(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임명증)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사회초년생(만33세 이하)	세대원으로 당해 최초로 소득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 미달할 경우 부모소득합산 가능) 월 급여액 X 12, 재직증명서	부모소득합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 必
이직, 지점발령, 휴직 등	현장직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급여 X 12 (이직 또는 해외에서 한국지점으로 발령 등) 이직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현장직 재직증명서, 연봉계약서	
공동명의자(타인)	위에 명시된 소득증빙서류 中 택 1	증여 지분 만큼 소득기준 적용

※ 본인명의 소득 부족 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세,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가능